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「지방세법」개정 (법률 제12153호, 2014.1.1)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(안 제9조 및 제10조)

○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·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(안 제11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법』제74조, 제84조의2, 제84조의3, 제92조, 제103조의3, 제103조의20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11. ~ 2014. 11. 30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종업원분

제9조 앞의 “제4장 지방소득세”를 삭제한다.

제9조 앞의 “제1절 소득분”을 삭제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율) 법 제84조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

제10조 앞의 “제2절 종업원분”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세율)”을 “(신고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

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지방소득세

제11조의 제목 “(신고의무)”를 “(세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제3절 종업원분</td></tr>
<tr><td>제4장 지방소득세</td><td><삭 제></td></tr>
<tr><td>제1절 소득분</td><td><삭 제></td></tr>
<tr><td>제9조(세율)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.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세 율</th></tr><tr><td>소득세분</td><td>소득세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tr><td>법인세분</td><td>법인세액의 100분의 10</td></tr></table></td><td>제9조(세율) 법 제84조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제2절 종업원분</td><td><삭 제></td></tr>
<tr><td>제10조(세율)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</td><td>제10조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제4장 지방소득세</td></tr>
<tr><td>제11조(신고의무)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td><td>제11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td></tr>
<tr><td>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.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
2.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3.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4.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</td><td>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td></tr>
</table>